

제 12 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①. 계약 기간은 서비스 대상자의 이용의뢰, 이용신청이 있으면 기관은 “장기요양 서비스 제공(이용)계약서”에 준하여 계약(기간명시)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,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. 단,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 할 경우 협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.

② 계약 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.

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
제 13 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)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.

(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.)

①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본 센터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전체 요양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, 기관은 그 나머지 비용을 공단에 청구한다.

②. 위 급여 대상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, 기타 의료급여대상자와 경감대상자는 총 요양비용의 7.5%를 부담한다.

③ 다만,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 이용자의 거주지에서,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, 수도, 가스, 전기, 전화

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 14 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) ①. 서비스 대상자의 신원 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 ②. 신원 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“을”이“갑”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.

③. 신원 인수인은 다음 각 사항을 한사랑재가노인요양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서비스 대상자의 신원 인수인이 변경 되었을 경우
- 서비스 대상자의 신원 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 되었을 경우

제 15 조 (계약의 해제)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제 2 조 (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)에 따른다.

- ①. "갑" 이 계약 해지를 통지 한 때,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.
- ②. "을" 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
"갑"에게 통지 한 때, 다만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.
- ③.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 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.